

전주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단1747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주식회사 삼오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6. 5. 11.

판결 선고2016. 6.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적재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상의 농작물을 수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15. 5. 22.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김성훈

별지